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: 2022년 1월 1일
2.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: 2024년 1월 1일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: 2026년 1월 1일

영양표시 대상 식품등(제6조제1항 관련)

1.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레토르트식품(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, 축산물은 제외한다)
- 나. 과자류 중 과자·캔디류, 빵류 또는 떡류
- 다. 빙과류 중 빙과·아이스크림류
- 라.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
- 마. 당류 중 당류가공품
- 바. 잼류
- 사. 두부류 또는 묵류
- 아. 식용유지류(油脂類)(동물성유지류,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·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)
- 자. 면류
- 차. 음료류(다류 중 침출자·고형차, 커피 중 볶은 커피·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)
- 카. 특수용도식품
- 타. 장류(한식메주, 한식된장,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)
- 파. 조미식품 중 식초(발효식초에 한한다)·소스류·카레(카레분은 제외한다)·향신료가공품(향신료조제품에 한한다)
- 하. 김치류, 절임류 또는 조림류
- 거. 농산가공품류 중 전분류·밀가루류·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·시리얼류·기타농산가공품류
- 너. 식육가공품 중 햄류·소시지류·베이컨류·건조저장육류·양념

육류(양념육·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한다)·식육추출가공품·식육
함유가공품

더. 알가공품류(알 내용물 100% 제품은 제외한다)

러. 유가공품 중 우유류·가공유류·발효유류·분유류·치즈류·산
양유

머. 수산가공식품류(수산물 100% 제품은 제외한다) 중 어육가공품
류·젓갈류·건포류·조미김·기타 수산물가공품

버.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·즉석조리식품, 만두류
서. 건강기능식품

어. 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
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

2.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
업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

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
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

다.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
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

라.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
및 축산물

마.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, 식육 및 알류